

제14조 (정족수)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재적회원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출석회원으로 인정하며, 위임장 제출 회원은 의결사항에 따른다.

## 제 4 장 사 무 처

제15조 (사무처)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② 사무처장은 대표회장이 임명하며 공무원 1급상당으로 한다.

③ 협의회는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·군·구에 대하여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전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표회장이 임명한다.

⑤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6조 (사무처의 업무)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총회·공동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·관리
2.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·회계
3. 지방자치관련 법령 개정 건의 및 의견 제출
4.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등과의 협력
5. 시·군·구의 공동 현안과제의 발굴 및 추진
6. 시·군·구간의 상호 교류·협력 증진
7. 지방자치제도 연구 및 정책 개발
8. 지방자치발전 관련 자료수집 및 정보관리
9.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·협력
10.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

제17조 (자문위원)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대표회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.

## 제 5 장 재 정

제18조 (재원) 협회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시·군·구의 부담금
2. 특별부담금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
4. 기타수입

제19조 (부담금) ① 부담금은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.

- ② 부담금은 사무처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공동회장단회의에서 협의·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.

제20조 (회계연도) 협회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제21조 (예산 및 결산) ① 협회회의 세입·세출예산은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협의·결정한다.

-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- ③ 협회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.

제22조 (감사 실시) ① 감사는 매 회계년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회회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.

- 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·군·구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## 2-2.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칙 : 25개구 가입

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회는 “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”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(이하 “자치구”라 한다)와 서울특별시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관심사를 협의·조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전문개정 2007. 8.28>

제3조(회원의 자격) 본회의 회원자격은 서울특별시 현직 구청장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소의 소재)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내에 둔다.

제5조(사업)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<개정 2005. 1.25>

1. 각 자치구의 사무에 있어서의 연락조정 및 조사연구
2.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관한 의견 개진 및 건의
3.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입안 및 추진
4.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사항

### 제 2 장 임 원 및 운 영

제6조(임원의 구성)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
1. 고 문 <2012. 6.28 개정>
2. 회 장 1인(단, 회장이 전국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임 될 때에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하는 별도의 회장 1인을 따로 둘 수 있다.) <단서신설 2005. 7.12>
3. 부회장 4인<개정 2007. 8.28>
4. 사무총장 1인 <2010.10. 8>

제7조(임원의 선출) ① 고문,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부회장은 다음 각호의 권역별로 1인을 추천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.

<개정 2007. 8.28>

1. 서북권 : 종로구, 중구, 용산구, 마포구, 은평구, 서대문구  
<2012. 5.24 개정 동대문구 동북권으로 변경>
2. 동북권 : 성동구, 광진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노원구  
<2012. 5.24 개정>
3. 서남권 : 강서구, 양천구, 구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
4. 동남권 :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

제8조(임원 및 회원의 임무) <개정 2005. 1.25>

- ① 회장은 본회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,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회의 회장직을 겸임한다. (단,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 회장을 둘 경우에는 그가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) <단서신설 2005. 7.12>
- ② 고문은 회장에게 본회의 임무에 관하여 자문한다.
-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된 때에는 임무를 대행하며, 권역내의 연락을 취하고 또 일반 회무를 심의하고, 긴급 안전의 처리를 담당한다.<개정 2007. 8.28>
- ④ 사무총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대변한다. <2010.10. 8>
- ⑤ 임원 및 회원은 각자가 품위를 지켜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신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,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,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자 노력한다.
- ⑥ 협의회 사무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구의 기획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.  
<신설 2005. 1.25>

제9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2008. 4. 29 개정, 2009. 6.30 개정>

- 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③ 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라 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3 장 회 의

제10조(회의)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.

1. 정기회 : 2개월마다 1회 개최한다. <2010. 9.14>
2. 임시회 : 회장이 임원과 협의하여 소집한다.

제11조(협의사항 등) 본회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·조정·결정·건의 또는 제시 등을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 제시
2. 중앙부처, 서울특별시, 타기관 등에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건의하거나 의견 제시
3.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통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권고
4. 기타 본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2조(협의 및 조정) ① 총회는 회장에게 위임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다.

- ② 일부 회원에 국한된 사항은 관련 회원간 협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3조(협의사항의 효력) ① 본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② 협의·조정된 사항도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 성실히 이행한다.

## 제 4 장 재 정

제14조(재원)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회원 소속 자치구의 일반회비
2. 자치단체의 공동 또는 개별 특별부담금
3. 기타 수입금

<전문개정 2005. 1.25>

제15조(회비)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회의 참석시 또는 지정된 온라인 통장에 매월 입금한다.

제16조(지출) ① 회원이 납부한 일정회비 중 일정액 이상은 정기에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, 적립된 금액은 본회의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.

② 매월 정기적립하고 남은 수입금 중에서 지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출하고 정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
1. 본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경비
2. 회의시 회의비 및 식대
3. 삭제 <2007. 8.28>
4. 기타 본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

제17조(준용) 이 회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국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회 회칙을 준용한다. <본조 신설 2005. 1.25>

#### 부 칙

제1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3조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례에 따른다.

#### 부 칙(2005. 1.25)

제1조(효력발생)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회칙 개정 이전의 집행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### 3. 관계법령

## 지방자치법

### 제2절 행정협의회

**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**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**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###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

**제165조(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,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.

1. 시·도지사
2. 시·도의회의 의장
3.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
4. 시·군·자치구의회의 의장

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7. 14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,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7. 14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-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7. 14.>
-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7. 14.>

## 지방자치법 시행령

- 제95조(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)**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, 특수행정수요의 충족, 공공시설의 공동설치, 행정정보의 교환, 행정·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·도로 구성한다.

##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1. 16.>

**제2조(구성)**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지사로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, 대도시권협의회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서,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장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1. 16.>

**제5조(협의사항)**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.

1.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
2.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
3. 도로의 신설 및 개수·보수
4. 버스노선의 신설·변경 및 폐지
5. 상·하수도 시설의 설치
6.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
7. 자원의 개발,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
8.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, 관리에 관한 사항
9.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6조(협의사항의 조정)**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은 수도권협의회 또는 대도시권 협의회에 있어서는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1. 16.>

**제7조(실무협의회)** ① 협의회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1994. 12. 8.>

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,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규약)**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.

#### 4. 소관업무별 협의회 가입현황

연번	해당부서	협의회 명	예산액 (단위:천원)
1	자치행정과	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	2,000
2	기획예산과	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	4,000
3	기획예산과	서울특별시시구청장협의회	4,000
4	일자리경제과	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	2,000
5	일자리경제과	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	10,000
6	가정복지과	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	5,000
7	교육청소년과	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	4,000
계			22,900